

2025년 더스마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1. 기관 현황

시설명	더스마트복지센터	설치일자	2024년 1월 1일
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477, 상가1 1층108호(매산로2가,대한대우아파트)		
전 화	031-224-6031	전 송	031-224-6032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자		

2. 일반 사항

목 적	더스마트복지센터의 시설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	자기요양급여제공 및 이용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계약해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정당한 서비스 불이행, 임의로 급여제공시간 변경 및 장기요양요원 임의 교체 등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월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3.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2025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4.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1회당 이용수가

구 분	금 액 (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5.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1회당 이용수가

구 분	1회 방문당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이상)	48,690

6.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9%, 6%
1)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2)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및 전신목욕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등
- 2)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되, 월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수급자가 전액부담한다.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1) 배상책임
 - (1) 급여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의 고의 혹은 중대과실로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한 경우
- 2) 면책범위
 -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한 사망 시
 - (2)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3) 수급자가 천제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4)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 (5)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9. 고충처리 등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1) 이용자(보호자)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하여 기록 및 보고, 조치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인력관리규정, 보수에 관한 규정, 복리후생 및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
- 3) 기관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